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32
------	------

제출일자 : 2024. 5. 2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안 제6조)
- 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의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 작성 조항 추가(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4항 신설)
- 라. 비(非)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부터 제11조

신설)

마.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제16조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24. 4. 24. ~ 2024. 5. 14.)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예탁 받”을 “예탁받”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발생되는”을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년대비 20%”를 “전년 대비 20퍼센트”로,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균금액의 150%”를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로, “10%”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여건”을 “재정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평균금액”을 “평균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85%”를 “85퍼센트”로 한다.

제6조 중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제1항”을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

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주요항목 지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운용 소관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재정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

축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 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중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상환 받고자”를 “상환 받고자”로, “별지 제2호서식을”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 중 “제10조”를 “제14조”로, “예탁 받”을 “예탁받”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2조)제3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검토결과”를 “검토 결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3조)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4조)제2항 중 “용자 받고자”를 “용자받고자”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예탁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을 “예탁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제10조제3항 관련)”을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제1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예탁금증서(제11조 관련)”을 “예탁금 증서(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용자약정서(제14조제1항 관련)”을 “용자약정서(제18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용자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을 “용자신청서(제1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u>예탁</u>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p> <p>2. 3.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u>발생되는</u>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p>	<p>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 -----.</p> <p>1. ----- ----- ----- <u>예탁받</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 ----- <u>발생하는</u> ----- ----- -----.</p> <p>② ----- ----- -----.</p> <p>1. -----</p>

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 5. (생략)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 전년
대비 20퍼센트 -----
----- 10퍼센트 -----

2. -----
-----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
----- 10퍼센트 -----
--

3. ----- 재정 여건

③ -----

1. -----

----- 평
균 금액-----

2. ~ 5. (현행과 같음)

④ -----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 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제1항의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85퍼센트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제12조제1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

3. 4. (생략)

<신설>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3. 4. (현행과 같음)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

위원회-----
--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

<신 설>

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운용 소관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재정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해촉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 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신 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
기 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들의 임
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3조(회계공무원) ① -----
제12조-----

획의 집행과 통합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2. (생략)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탁금을 제2항의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증
명서류-----
--.

제1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

----- 별지 제1호
서식의 예탁신청서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상환받고자 -----
-----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
-----.

④ -----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예탁금 증서 교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용자) ①·② (생략)

③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7조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용자기간) 구청장은 제4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용자하는 경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예탁금 증서 교부) -----
-- 제14조-----
----- 예탁받-----

-----.

제16조(통합기금의 용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회-----

----- 검토 결과-----
-----.

제17조(용자기간) -----

----- 위원회-----
-----.

제14조(용자신청 등) ① (생략)

②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부서(이하 “용자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금의 원금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자 약정 시 결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6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예탁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예탁금증서(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용자약정서(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용자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

제18조(용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용자받고자 -----

-----.

제19조(용자금의 원금 상환) ① -

----- 제18조제1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예탁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예탁금 증서(제1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용자약정서(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용자신청서(제18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예산팀 박선용
연 락 처	2627 - 1095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용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 12. 31.>

2.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동)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8조제1항의 통합기금운동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통합기금운동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동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동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운동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동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통합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자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 예탁 시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예탁금을 제2항의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예탁금 증서 교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에는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기금의 용자) ① 통합기금의 용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한 다른 회계·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용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③ 통합기금의 용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7조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용자기간)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으로 용자하는 경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4조(용자신청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용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용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부서(이하 “용자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금의 원금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자 약정 시 결정한다.

② 용자부서에서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용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금 및 이자와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 연체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을 상환일로 한다.

제16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용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

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